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와 언어 교육 정책

정희원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장

1.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

우리나라는 지난 5,000년 역사 동안 단일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지닌 채 살아왔다. 언어 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외에는 주요 소수 언어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단일어 환경에 놓여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세계 여러 언어들에 대해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에스놀로그(Ethnologue)》(16판,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언어 다양성 지수가 세계 최하위로, 224개국 중 216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은, 처음부터 다문화 국가로 출발한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호주 등과는 달리 다른 민족이나 언어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심지어 우리는 그동안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라는 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국제 사회로부터는 우리의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의 폐쇄성을 강화하여 국제화된 세계정세에 대응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

표 1. 언어 다양성 지수

순위	나라	다양성 지수	언어 수	사용자 수(단위: 명)
1	파푸아뉴기니	0.990	830	3,833,255
2	바누아투	0.974	114	188,649
3	솔로몬제도	0.967	71	368,786
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0.959	82	3,478,795
...
215	르완다	0.004	5	6,503,000
216	대한민국	0.003	4 ²⁾	42,063,600
217	사모아	0.002	2	199,200
...
224	바티칸시국	0.000	1	1,000

기도 하였다.¹⁾

그러나 국경을 넘는 인력의 이동이 매우 빈번해진 오늘날, 한국에도 예전과는 달리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화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80년대 말,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소위 3D 업종에 종사할 인력이 크게 부족해져 저개발국 출신의 불법 노동 인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1993년 산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불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8월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는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한국이 실제와는 다른 단일 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혼혈인과 외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혼혈인’이라는 표현과 ‘단일 민족 국가’라는 표현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2)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 한국 수화, 영어, 중국어의 네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참고로 북한은 2,000만 인구가 한국어 하나만 사용하고 있어 222위이다.

법 체류와 신분 불안정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2003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대량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머물다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다문화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된 것은 국제결혼을 통해 많은 이주 여성들이 등장하게 된 2000년 무렵에 이르러서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일부 남성들이 국내에서 신봉감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저개발 국가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의 대량 이주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 초에는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 동포 여성들이 주 대상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여성들의 국적이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확대되었고, 1990년대 말부터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다. 지금은 연간 결혼 건수의 약 9%가 국제결혼이며, 그중 대부분(90%)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이다.³⁾

3) 국제결혼 이주자 국적별 현황(출처: 법무부, 2013. 7. 단위: 명)

	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149,770	62,657	39,565	12,037	10,099	4,578	2,634	2,393	15,807
여성	128,281	50,751	39,219	10,874	9,806	4,568	2,576	2,317	8,170
남성	21,489	11,906	346	1,163	293	10	58	76	7,637

그림 1. 체류 외국인 총괄 현황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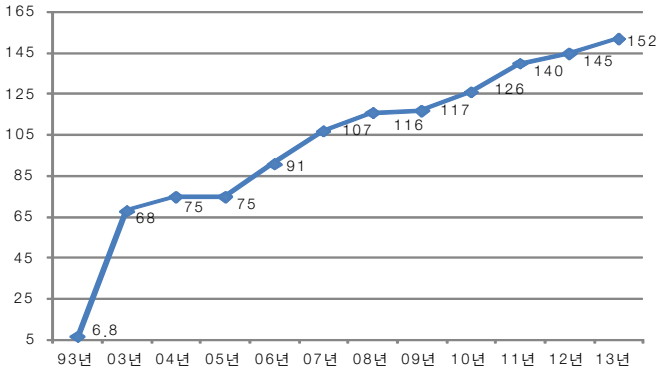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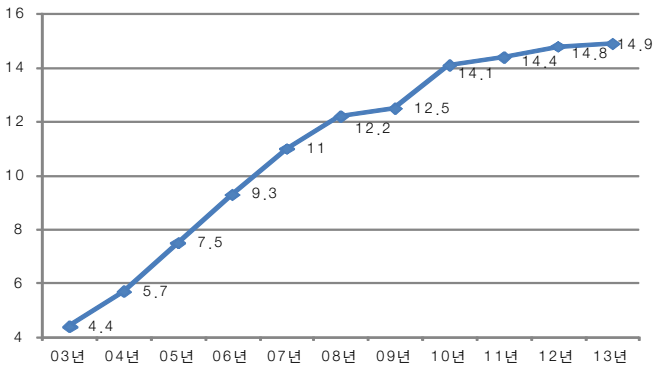


그림 2.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단위: 만 명)



최근 통계(2013년 6월)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15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게 되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55만 명, 결혼 이민자가 15만 명, 유학생이 9만여 명에 이른다. 2003년에 전체 외국인 수가 68만 명으로 인구의 1.3% 남짓 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10년 만에 외국인 이주민 수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규정할 수 있을까? 외국인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었을 때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지, 누구나 동의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대개 외국 태생 인구 비율이 국민의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이민자 비율이 10%를 넘으면 이민자와 관련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에 비추어 고도의 다문화 사회로 분류하기도 한다. 어떤 기준을 따르든 외국인 주민이 이제 막 3% 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를 다문화 사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로 분류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 사회화를 먼저 경험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두루 살피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다양한 다문화 사회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는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진행되어 온 탓에 그에 대한 대비책에도 시행착오나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펼쳐 온 다문화 사회 정책을 언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이주민 대상 정책 추진 경과

정부에서 벌이는 사업들은 모두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이 장에서는 그동안 실시되어 온 외국인 이주민 관련 정책의 경과

를 법률과 제도 중심으로 개관해 보겠다.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나면 후술할 다문화 사회 대비 언어 교육 정책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게 된 첫 번째 조치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4년 8월에 시행된 고용허가제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국가가 허용하고 관리하게 됨으로써 불법 체류 및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는 상당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 노동 인력을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주를 불허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어서 처음에는 3년까지만 고용 계약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몇 차례 법 개정으로 지금은 재계약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해지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1회 재입국을 허가하는 것으로 체류 조건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정주를 불허하는 단기 순환 정책의 기초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탓에 이 법률에서는 노동자의 고용 허가 조건이나 노동 현장에서의 권리 보호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들의 원만한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6년에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여성 가족부, 교육부, 문화부, 외교부, 법무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 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초로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결혼 이민자를 포함하여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차별 해소를 통한 인권 신장과 사회 통합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 시행된 언어문화 이해

교육, 보건 의료 지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여러 가지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의 근거가 되었다.

2007년에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각 정부 부처나 지방 자치 단체들이 독자적, 산발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2008년에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08~2012)’이 수립되었으며, 2012년에는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13~2017)’이 수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결혼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국어 및 대한민국의 제도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결혼 이민자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 및 보육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재한 외국인 개념을 합법적인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협소하게 규정한 점,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치중하여 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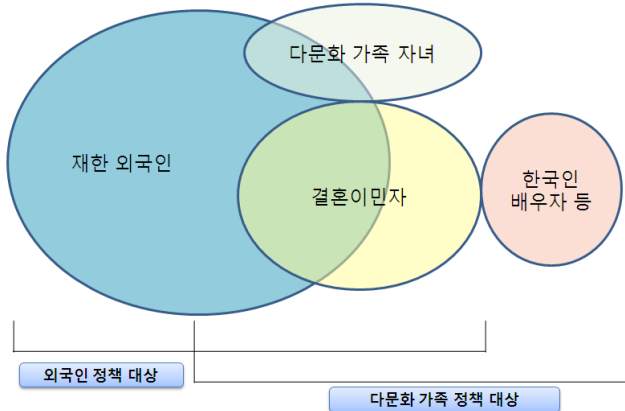
2008년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⁴⁾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

4) 외국인 정책은 ‘재한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과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정책은 결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결혼 이민자 등에게 가족 상담, 부부 교육, 직업 훈련, 자녀 교육 지원,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

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므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내용은 대부분 외국인 정책에 포함된다.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대상



되었으며, 2012년에는 ‘제2차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2013~2017)’이 수립되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은 또한 2013년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인 부모의 모어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최근에 이루어진 주요한 법률적 조치로는 2012년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제도가 법정화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국적이나 영주권 등을 획득하려는 외국인을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는 사증을 발급받거나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신청 시 우대받는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 이민자는 간이 귀화 신청 시 필기 시험과 면접 시험이 면제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법률과 제도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관련 법률과 제도

법률	대상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정일	소관 부처
출입국관리법	한국에 출입국하는 모든 사람	대한민국에 출입하는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	1963. 3. 5.	법무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입국 외국인 전체, 일반 국민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이주민 사회 적응 지원, 외국인과의 상호 이해·존중을 통한 사회 통합 실현	2007. 5. 17.	
다문화 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결혼 이민자 및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위한 지원	2008. 3. 21.	여성가족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허가 및 사회 적응 지원	2003. 8. 16.	고용노동부

3. 다문화 사회 대비 한국의 언어 교육 정책 현황

3.1. 외국인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국내 외국인 인구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주로 양적인 증가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내용 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외국인 이주민의 구성을 살펴보면 결혼 이민자, 유학생, 근로자, 중도 입국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족 자녀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한국 거주 기간도 종전의 단기 체류 중심에서 점차 정주 목적 이주민이 늘어나는 양상으로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국가의 언어 정책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에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종교 기관이나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정부 부처들도 각기 정책대상과 소관 업무에 따라 앞다투어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에 예산과 인력 등의 중복 지원이 문제시되었고 무엇보다 교육의 체계화, 전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몇 차례 부처별 역할 분담을 위한 조정 과정을 거쳐 현재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유관 부처들이 각각 고유한 영역에서 한국어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자료 개발이나 교원 재교육 등 내용 면에서는 전문 기관인 국립국어원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한국어 교육 사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과 한국 사회 이해 과정으로 나뉘는데, 한국어 과정은 사전 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 및 이수 시간을 배정한다. 한국 사회 이해 과정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생활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참가자가 5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수료자에게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을 면제해 주거나 국적 취득을 위한 대기 시간을 단축해 주기도 하고 사증 취득이나 변경 시 혜택을 주기도 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9년 3월에 시작하였는데 2013년 3월 269개 기관에서 총 3만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표 3. 정부 부처별 한국어 교육 사업 현황

구분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련 법률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교육기본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결혼 이민자 귀화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 취학 전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가족 취학 아동 	외국인 노동자
교육 기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지정 기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207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주요 사업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집합 교육 및 방문 교육 자녀 대상 언어 발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과정 도입·운영 다문화 가정 학생 한국어·기초 학력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교육 지원 취업 전 현지 한국어 교육
국립국어원 추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교재 개발 지원 교원 연수 과정 개발 한국어 강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교재 개발·보급 교원 양성과정 개발 방문지도사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재 교원용 지침서 개발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표 4.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육 과정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한국어					한국 사회 이해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이수 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사전 평가 점수	구술 3점 미만	3~20점	21~35점	36~65점	66~80점	81~100점

교육 사업을 펼쳐 왔다. 여성가족부 사업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207 곳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법정 기관으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 및 취업 지원, 자녀 보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한국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집합 교육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개설된 한국어 교실에 이주 여성들이 직접 출석하여 강의를 듣는 것이고, 방문 교육은 교사가 이주 여성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수업을 하는 형태다. 집합 교육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주 여성들끼리 교류의 기회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은 지리적 접근성 문제나 육아, 가사 등으로 출석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언어 소통 문제로 조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국 5년 미만의 결혼 이주자들에게 가정 방문 형태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전국에 1,787명의 방문 지도사가 활동하여 10,864가정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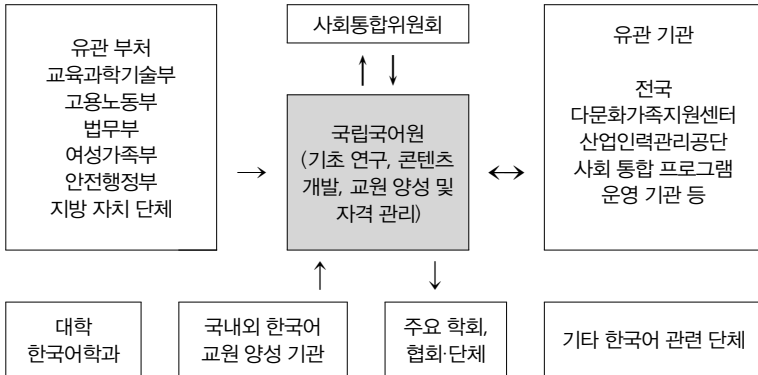
자녀들은 언어 발달이 지체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언어 발달 지체는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들이 한국어에 서툴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언어적 자극을 주지 못해서이므로 어머니 대신 언어발달지도사들이 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 지도를 원하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국 20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172개 센터에서 실시하며, 2012년에는 200명의 언어발달지도사가 활동하여 8,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지원을 받았다.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가정 자녀)은 총 38,678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55%에 달한다. 이 중 외국인 가정 자녀는 5.5%(2,139명)로 소수이며,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대부분(94.5%)이다. 국제결혼 자녀 중 국내 출생 자녀는 33,999명이며 나머지 2,540명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재혼하는 부모를 따라 우리나라에 오게 된 '중도 입국 자녀'들이다. 중도 입국 자녀들은 외국인 가정 자녀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2년 3월에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중도 입국 자녀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이들을 정규 학교에 배치하기 전에 한국어 등 사전 교육을 하는 다문화 예비 학교를 확대하여 운영한다. 즉, 2011년에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에 불과했던 다문화 예비 학교를 2012년에는 인천, 대전, 제주 등 전

국 15개 지역에 26개교로 늘려 설치하였다. 예비 학교에는 한국어 강사, 이중 언어 강사 및 상담 교사를 두어 학생들의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6개월가량의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정규 학교로 재배치하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2년에는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한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교육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2013년부터 학교에서 KSL을 정규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과정 마련에 이어 표준 교재도 개발하였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초·중·고 학교 급별로 초급 및 중급 교재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2013년 현재 각 학교에서 한국어 표준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정규 학교에서도 특별 학급을 설치하거나 방과 후 학교, 방학 및 주말 지도를 통해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제2 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안전 지침이나 규정 등을 이해하지 못하여 산업 재해에 쉽게 노출되거나 의사소통 곤란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어느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착 목적의 이주민과는 달리 일시 체류자로만 인식되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입국 전에 한국어 능력시험 접수를 필수로 확보해야 하고, 현지 사전 교육을 통해 38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의무로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험 접수 취득이나 현지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을 하게 된다. 입국 후에는 16시간의 산업 안전과 현장 적응 위주의 취업 교육만을 이수하게 되는데, 16시간의 교육에는 한국어가 단 2시간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후 외

그림 3.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관련 업무 추진 관계



국민 노동자들에게 대한 한국어 교육은 전적으로 개인적 선택에 따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잔업이나 휴일 근무 등에 바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사업을 소관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 부서가 통할하지 못하고 다양한 부처가 각기 사업을 펼치고 있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민 대상 사업은 정책 대상 및 현장이 다양하여 어느 한 부서에서만 운영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사업 실행은 여러 부처에서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진행하되,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담당하여 내용적 표준화 및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국내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이 국가의 언어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 수요 및 실태를 조사하고 기초 연구를 실시하며,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한편 여성부,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

조 체제를 구축하여, 특히 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 및 교사 교육을 통해 현장 교육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은 다양한 기초 연구와 교재 개발, 교사 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립국어원의 사업 추진 성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한국어 교육 이론 및 기초 연구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2009)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사 교육용 교육 과정 개발(2009)
 -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2011)
 - 다문화 가정 언어 사용 실태 조사(2011)
 - 다국어 기초 사전 편찬(2010~) 등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 여성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한국어 교재 28종 개발(2008~)

-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재연수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및 재교육 과정 운영(2010~)
 -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연수회 실시(2012~)
 - 국립국어원 개발 교재의 교사용 지침서 개발 및 보급

- 방송,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자료 개발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라라라’ 온라인 강좌 개발(2009)

-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온라인 강좌 개발(2009)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등 교육방송 콘텐츠 15종 제작, 방영(2007~)

3.2. 외국인 이주민 대상 이중 언어 교육 지원

2000년대 초반까지 다문화 사회화에 대비한 언어 정책 연구는 주로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는 별다른 준비 없이 외국인 이주민을 대량으로 맞아들인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을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다문화 사회 대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우리의 대처가 지나치게 우리 문화에 대한 동화만을 강요하는 방식이어서 좀 더 개방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모어에 대한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담론으로 논의가 확대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주민 개인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중 언어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완전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정서 발달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머니의 모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 변화는 바로 정책 기조에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2010년 수립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과 2012년에 수립된 ‘제2차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의 정책 기조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제1차 기본 계획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정착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로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

다. 제2차 기본 계획에서는 1차와 달리 이주민을 시혜적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보고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 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 마련한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 과제로 '적극적인 개방,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 행정, 외국인 인권 옹호'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그중 '질 높은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이민자 자녀의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방과 후 교실의 원어민 보조 교사로 활용하는 등 이중 언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다문화 교육 전담 교사·이중 언어 교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학교에 배치하는 등의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중 언어 교육 지원 사업은 2009년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이중 언어 강사 70명을 양성하여 서울 경기 지역 초등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이는 공교육에서 처음으로 이중 언어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중 언어 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는 언어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강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중 언어 강사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외국인 이주민 중에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6개월간 위탁 대학에서 정해진 교육 과정을 수료하도록 하였다. 2011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125명의 강사들이 활동하였으며, 2012년에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 경남, 경북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298명의 강사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활동하였다. 교육부는 향후 다문화 학생의 국적 및 연령, 언어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이중 언어 강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데, 2015년까지 1,200명의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언어 강사들은 방과 후 활동이나 주말 지도 등을 통해 1주 25시간 이내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는 이중 언어 교육을, 일반 어린이들에게는 다문화 이해 수업이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의 이중 언어 강사 파견과 유사한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도 '엄마(아빠) 나라 언어 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 영재 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가 결혼 이민자여서 또래들 사이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부모 나라의 언어문화를 알기 쉽게 가르쳐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강사는 결혼 이민자 중에서 선발하며, 주요 교육 대상은 3세 이상 초등학교 재학생인 다문화 가정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한편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별반 운영도 장려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아니어도 교육받을 수 있으나, 전체 수강생 중 다문화 가족 비율이 60%를 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영어를 제외한 결혼 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를 가르치는데, 2012년에는 전국 207곳 중 100곳의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에서 121명의 강사가 활동하였으며, 2013년에는 158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중 언어 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 여성가족부 사업은 단계적으로 교육부 사업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이중 언어 교육 지원 사업은 이주민들을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사업만 벌여 오던 정부가 타 문화에 대한 개방과 포용

으로 한 발짝 나아간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실제 이중 언어 교육이 실현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결혼 이민자인 부모의 언어를 배울 수 있으려면 학생들 개개인이 교육받을 외국어를 선택하는 일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 있는 강사 확보의 어려움⁵⁾과 실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외국어 중심으로 교사 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은 주로 중국어, 일본어 위주로 진행되며, 여성 결혼 이민자가 많이 사용하는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은 실제 많이 교육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실제 학교로 파견된 강사들도 사업 초기(2009~2010)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모어와 연계한 한국어 및 모국어 지도를 주요 임무로 부여받았으나, 2011년 이후에는 학교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학습이 부진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도나 상담을 주로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이중 언어 사용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혼 이민자인 부모들이 가정에서 마음 놓고 자녀들과 자국어로 소통하는 일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외국어 사용이 아이들의 한국어 습득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한국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의 이중 언어 교육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리라고 염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중 언어 교육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달

5) 서울시교육청에서 2012년에 학교로 배치한 이중 언어 강사들의 국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신국	합계	중국	일본	몽골	우즈베크	카자흐	키르기스	러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	미얀마	베트남	대만	인니
인원	111명 (100%)	42명 (37.8%)	26명 (23.4%)	20명 (18%)	5명 (4.5%)	2명 (1.8%)	1명 (0.9%)	2명 (1.8%)	3명 (2.7%)	1명 (0.9%)	1명 (0.9%)	1명 (0.9%)	4명 (3.6%)	2명 (1.8%)	1명 (0.9%)

성할 수 있으려면, 강사의 양성과 지원 등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다문화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3. 외국어 교육 정책

한국에는 한국어 이외에 두드러진 언어 사용 집단이 존재하지 않아 한국의 언어 정책은 한국어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곧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언어 정책과 국어 정책은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영어 등 다른 언어는 외국어 교육의 대상으로만 고려되어 수학과 역사, 지리 등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교육 과정 편성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외국어를 포괄하는 언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립국어원이 있지만,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공용어인 ‘한국어’와 관련한 사항만을 담당할 뿐이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 예를 들면 어떤 외국어를 제1 외국어로 택하여 몇 학년부터 공교육에서 가르칠 것이며, 제2 외국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등이 모어인 한국어와의 관련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선택하는 과정은 단지 학교에서 그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나 전적으로 학생들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를 뿐, 국가의 정책적 필요나 수요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시작된 1945년 광복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제1 외국어로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오랫동안 공교육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 시기는 중학교에서부터였으나, 영어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997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과

정에 처음 영어를 도입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유치원 과정이나 그 이전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에서 영어는 진학이나 취업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일에 과도하게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2012년 교육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사교육비로 연간 19조 원을 사용하였는데, 이중 가장 많은 비용인 6조 원을 영어 학습에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 국제화가 미국화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어,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도 영어 교육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영어 이외의 제2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심지어 2000년에는 대학 입시에 제2 외국어 성적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나라에서 무슨 제2 외국어나”⁶⁾라며 반대 여론을 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들은 “영어가 날로 득세하는 세상에서 제2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에 뒤늦게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2 외국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편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반론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크게 공감을 얻지는 못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따르면 제2 외국어는 중학교 때부터 교육이 가능하다. 2001학년도부터 연간 102시간 배당되는 중학교 재량 활동 시간에 생활 외국어, 컴퓨터, 환경, 한문 중에서 학교장이 선택한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선택 가능한 외국어 과목은 독일

6) 《주간동아》 2000. 3. 30. 227호 표지 기사 (<http://weekly.donga.com/>)

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7개이다. 이론상으로는 중학교에서 제2 외국어 교육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중학교 1학년 재량 활동 실시 현황을 보면, 2개 과목을 개설한 1,651개 학교 중 대부분(94.3%)이 한문과 컴퓨터를 선택했으며, 제2 외국어의 경우 일본어가 1.9%, 중국어 0.2%, 프랑스어는 3개 과목을 개설한 학교 중 한 군데에서 가르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다른 외국어는 선택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석 2003:31~32).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1주에 3시간씩 제2 외국어를 배운다. 현재 교육 과정에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7개 과목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마다 개설하고 있는 강좌에 제한이 있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현황 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본어와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 밖에 프랑스어와 독일어, 스페인어 순으로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러시아어와 아랍어는 외국어고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일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제2 외국어 과목이 대학 입시 필수 과목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제2 외국어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⁸⁾ 대

7) 고등학교 제2 외국어 과목 선택 현황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1	201,581	113,445	9,999	10,432	3,592	277	12
2	129,953	66,619	5,883	8,081	1,712	340	43
합계	331,534	180,064	15,882	18,513	5,304	617	55

출처: 김현석 외(2013), 74

학 입시에서 제2 외국어와 관련한 최근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올해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배려하여 기초 베트남어가 제2 외국어 선택 과목에 추가된 것이다.

최근 급격히 진행된 다문화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사회는 그동안 무관심했던 외국어 교육 분야에도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시행된 다문화 사회 대비책이 외국인 이주민들을 한국 사회에 통합하려는 목표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다언어 사용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입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해서 법률이나 의료 등 몇 가지 필수 분야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언어권별로 다른 한국어 교재를 발간하여 제공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최근에 일방적 동화만을 강요하는 정책에 대해 반성적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구체적 정책으로 결실을 맺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 정책이 외국인 이주민들의 모어 사용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현재의 단일 언어 사회에서 벗어나 다언어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 언어를 통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기능

8) 대학 입시에서 필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문과)/과학(이과)’이다. 문과 학생들이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사회과는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사, 세계지리, 경제, 법과 정치’ 등 10개 과목 중 두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한다. 제2 외국어는 사회과 1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데, 교과 과정에 개설된 7개 외국어와 한문,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된 ‘기초 베트남어’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응시생의 약 10%가 한문/제2 외국어를 선택하였다.

적 의미 외에, 외국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범위가 넓어져 열린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게 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정리 및 요약

지금까지 다문화화에 대비한 한국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은 외국인 이주민의 비율이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아 다문화 사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화가 진행 중이다. 정착 목적의 외국인 이주민들을 기존의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여서, 언어 교육 정책의 초점은 그들에게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놓여 있다. 이에 한국어 교육 사업은 정책 대상에 따라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노동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언어 정책 전문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교육 자료 개발과 교사 교육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내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언어 다양성 측면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모어 사용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고려는 미미한 편이다. 최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보다 그들의 문화에 대해 포용적인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외국인 이주민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더 많은 보완책이 마련되는 한편,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언어 교육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현석 외(2013), 문화 소통 활성화를 위한 언어 정책 연구, 국립국어원.
- 교육과학기술부(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 2012년 3월 12일
보도자료.
- 김경석(2003), “국가의 장래를 위한 제2 외국어 교육 정책”, 《프랑스어문교육》
15,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 김선정(2012),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성과”, 《비교문화연구》
제29집.
- 김정순(2013), “이주민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
정책 포럼 발표 자료집,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박정아(2012),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 《새국어생
활》 22-3, 국립국어원.
- 박진경(20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
학회보》 19-3, 한국정책학회.
- 박창원(2011), “국어 정책을 위한 제언”, 《새국어생활》 21-1, 국립국어원.
- 법무부(2008),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08~2012)”, 법무부.
- 법무부(2012), “2012년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 법무부.
- 여성가족부(2010),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2010~2012)”,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 “2012년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
- 정희원(2013),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의 현황”,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
정책 포럼 발표 자료집,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